참고 **부정수급 분야별 신고 사례**

1 복지분야

1. 요양 급여

○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·운영하거나, 요양병원 시설 종사자를 허위 등록하는 방법 등으로 급여비용 부당청구

> ○ A 한의원 사무장은 한의원의 실질적 소유주로, 의사 4명을 월급 원장으로 고용하여, 소위 사무장의원인 불법의료기관을 개설·운영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 7억 1,407만 원을 부정수급

2. 복지시설

○ 물품구매대금 부풀리기, 종사자 입퇴사일을 조작하여 인건비 과다지급 후 되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

> ○ B 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집단상담과 개별상담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상담 강사료 585만 원을 지급받는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
>
> ○ C 복지공동체 대표는 지원시설의 상담지도원을 채용한 후 법인의 회계업무를 맡게 하였음에도 시설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총 4,960만 원을 부정수급

3. 영유아보육료 지원금

○ 어린이집 보육교사 허위 등재 또는 아동의 시간연장 허위 등록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

> ○ D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 2명의 임용일과 퇴사일을 조작하거나, 보육아동 11명을 허위등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급여와 보육료 등 보조금 총 2,513만 원을 부정수급

2 산업분야

○ 창업지원 분야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성과물을 중복 제출하거나 전통시장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운영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 등을 사적으로 횡령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

○ 광주 소재 E 회사 대표는 2016년 OOO테크노파크와 「청년예비창업가 발굴육성사업 사업화지원」수행 협약을 체결하고 2016. 12. 1.부터 2017. 1. 31.까지 사업을 수행하면서, 2016. 12. 7.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 과제로 제출한 마케팅비를 동 과제 수행비용으로 중복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

○ 충남 홍성 소재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의 F 단장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구입이 불가능한 책상 및 가구를 구입 후 구입 목록을 위변조하고, 사적인 여행을 업무용 출장으로 속이는 한편, 실제 구매한 사무용품을 임차한 것으로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

3 일자리 창출 분야

○ 근무직원 허위 등재, 기존 근로자를 신규 채용으로 조작, 허위 정산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자리 창출·지원 보조금 부정수급

○ OO광역시에 거주하는 김모씨 등 5명은 실제로 창업하지 않고 허위 정산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지자체의 지역·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보조금 6,400만 원을 횡령

○ 수도권 소재 2개(G, H) 업체는 이미 채용된 근로자들의 입사일을 조작하여, 신규인턴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청·장년 인턴지원금을 부정수급하고, 이 허위 인턴들을 인턴 기간 종료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까지 총 1,800만원 편취

4 농·축·임업 분야

○ 공사금액 부풀기, 자부담 과다 보고, 허위 사업정산서 작성 등으로 보조금 부정수급

> ○ I 농민을 포함한 11명은 저온저장고 판매업자와 담합하여 저장고 구입 시 실제 금액보다 가격을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, 일부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 총 1,200만 원을 부정수급
>
> ○ J 농민은 자신 소유의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논농사 직불금을 총 355만 원을 부정수급

5 환경·해양수산 분야

○ 환경교육을 수행하면서 강의실적을 허위 제출, 김 활성처리제 사업 등 해양수산 관련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면서 보조금 부정수급

> ○ 김양식장에서 사용되는 활성처리제의 제조·생산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을 통해 어민에게 활성처리제(지방비 65%, 자부담 35%)를 자부담 없이 판매한 후, 저가로 회수하여 타 지역에 재판매하는 형태로 보조금을 부정수급
>
> ○ 경기도 소재 K 환경보전교육센터 센터장은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환경보전교육사업을 수행하면서 강사들이 실제 강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보조금을 집행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금액미상의 보조금을 횡령

6 기타(공무원 보조금 지원 사업 특혜제공 및 유착비리)

> ○ **(특혜제공)**
>
> · 특정사업자를 위한 단기 공고, 선발자격요건·심의절차 생략 및 조작
>
> · 특정인과 이익단체들의 영향력 및 알선·청탁에 따른 특혜제공
>
> ○ (공무원 **유착비리**)
>
> · 공무원이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혜나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수수
>
> · 보조금 지급 요건 점검, 현장확인 등 규정된 절차를 생략하고 보조금 지급